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4. 26 선고 2023가합53082(본소), 2023가합53099(반소) 판결
[매매대금 · 경업금지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대현, 이세준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김태우, 최승만

변 론 종 결 2024. 3. 22.

판 결 선 고 2024. 4. 2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부터 2023. 4. 6.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 소 청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반 소 청구 취 지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함)는 파주시 및 이에 인접한 시, 군에서 2032. 4. 3.까지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상대로 한 미술학원업을 직접 영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영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함)에게 위반행위 1일당 500,000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이종사촌 사이로서 원고는 파주시 C건물, D호에서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랜차이즈 미술학원 ‘E’ 산내점(이하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2021년 9월경부터 위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학원 영업의 양수를 제안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권리금 5,000만 원, 학원 차량 매매대금 1,8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학원의 영업양도를 하기로 잠정적인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9. 27.부터 2022. 2. 10.까지 원고에게 권리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2. 3. 14. 이 사건 학원의 소재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위 잠정적 합의에 따라 2022. 4.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학원에 관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 권리금 잔금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위 계약금 2,000만 원과 피고에게 대여한 위 2,000만 원을 모두 고려하여 권리금 5,000만 원과 동일한 액수로 기재하였다.

학원매매계약서

[제1조] 매매대상 학원은 아래와 같다.

1. 소재지: 파주시 C건물, D호
2. 학원명: E 산내점
3. 대표자: A

[제2조] 위 학원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1. 권리금: 5,000만 원
2. 건물보증금: 2,000만 원, 계약 시 지불함
3. 차량대금: 1,800만 원, 2022. 12. 31. 지불
4. 중도금: (없음)
5. 잔금: 5,000만 원, 2022. 12. 31. 지불

[제3조] 위 학원의 명도는 2022. 4. 1.로 한다.

양도 범위: 학원생 및 학원 전체 시설, 단 개인 PC 및 소장품은 제외한다.

[제4조] 원고는 2022. 4. 1.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에게 주기로 한다.

[제5조]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022. 4. 1.부로 원고에서 피고로 원장을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을 2022. 12. 31.까지 지급한다.
 - 2-1. 잔금 미지급 시 피고는 권한 일체를 포기한다.
3. 차량 대금에 대한 지급방식은 피고가 소상공인 대출 시 원고에게 지급한다.

3-1. 소상공인 대출이 지연될 경우 2022. 12. 31.까지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

4. 4월 원비가 3월에 결제된 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다.

4-1. 3월에 결제된 4월 원비의 세금 5%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다.

(4, 4-1 정산금액 7,982,250원 영수함)

5. 3. 31.까지 운영비 일체(임대료, 관리비 포함)는 원고가 지급한다. 단 피고의 급여는 제외한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22. 9. 10.부터 2022. 9. 26.까지 합계 1,800만 원을 지급하여 학원 차량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권리금 내지 권리금의 잔금 5,000만 원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바. 원고는 2021. 12. 16. 이 사건 학원과 약 2km의 거리에 있는 파주시 F건물, G호 건물을 매수하여 2022. 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곳에서 'H'이라는 상호로 성인 및 초등학생 이하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미술학원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본소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에 따른 권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본소에 관한 상계항변 및 반소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영업양도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

나. 피고

이 사건 본소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를 하면서 이 사건 학원의 원생이 100명 정도로서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고지하였으나 이는 피고를 기망하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영업양도 당시 실제 원생

62명과 차이나는 38명(= 100명 - 62명)을 권리금의 비율로 계산한 1,900만 원(= 5,000만 원 × 38명/100명)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 후 이 사건 학원 인근에 초등학생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학원을 개원함으로써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 및 위자료채권으로 원고의 권리금채권과 상계한다.

이 사건 반소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양도를 하였으므로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영업양도 후 10년 동안 파주시 및 이에 인접한 시, 군에서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상대로 한 미술학원업을 직접 영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영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간접강제로서 위반일수 1일당 500,000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양도에 따른 권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파주시 및 이에 인접한 시군에서 이 사건 학원과 동종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한 원 · 피고의 주장은 위 2.에서 본 것과 같은바,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 사건의 ① 첫 번째 쟁점은 이 사건 영업양도 당시 원고가 원생의 수 등에 관하여 피고를 기망하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이고, ② 두 번째 쟁점은 이 사건 영업양도 당시 그에 따른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위 사실 및 갑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영업양도 전후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영업양도 당시 ①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학원 영업에 관하여 원고의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는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학원 영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통화 녹취록(갑 제4, 13, 17호증) 내용 및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가 이

사건 영업양도 전 이 사건 학원에 근무하면서 원고가 새로 개업하는 H의 인테리어 작업에도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학원 원생의 수나 위 H이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 당시 작성한 ‘학원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 경업금지의무나 원생의 수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그 전후에 걸쳐 원고의 H 영업에 대하여 항의하는 등 이의를 제기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 후인 2022. 5. 2. 원고의 H에 찾아와 이 사건 학원의 2022년 4월분 학원비를 결제한 원생의 수가 82명임을 전제로 그 금액을 원고로부터 정산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정산액을 정리한 표를 직접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시하였고, 원생의 수가 부족하거나 적다는 등의 항의를 한 흔적이 없다.

라. 피고의 모친 I도 이 사건 영업양도 전 원고가 H 건물을 매수하는 과정을 돕고 아들인 피고가 위 학원의 인테리어를 도운 관계로 원고가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학원 영업을 하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I은 2022. 2. 7. 원고와의 통화 과정에서 원고가 “애들이 써야 되니까.” 등 위 학원이 아동을 대상으로 영업함을 전제로 한 말을 여러 차례 하였음에도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 후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22년 5월경 학습에 어려움을 겪던 아동을 학부모와 상의하여 원고의 H에 다니도록 조치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는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는 약정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 측이 권리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원고에게 이의제기한 메시지(을 제4호증) 내용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영업양도에 따른 권리금 지급 기한인 2022. 12. 31.과 근접한 시기나 그 후에 이르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는 원고가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 하리라는 점을 알고는 있었으나,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학원 차량을 구입하는 등으로 아동을 상대로 한 본격적인 영업을 하리라는 점까지는 이 사건 영업양도 당시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본소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 기한 다음 날인 2023. 1. 1.부터 이 사건 본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3. 4. 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석, 판사 류승우, 판사 이균철